

제1조 (계약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주야간보호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제2조 (급여범위)

주야간보호급여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3조 (이용자 권리 · 의무)

기관과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다음의 권리와 의무가 발생되며 상대방의 권리를 존중하며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권리

- 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아 인격과 재산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나. 직원이나 다른 이용자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다. 식사, 의복, 주거환경, 여가선용에 있어서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 라. 시설의 운영에 대해 이용자로서의 의견을 표시하고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마. 가족, 친구 등과 자주 만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바. 시설 이용 시 사생활이 존중되고 보호되며 비밀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사. 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사전에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알권리를 가진다.
- 아.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기관의 의무

- 가.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 나. 급여 제공시간에 이용자에게 일어난 신병이상에 대하여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 다. 이용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보호자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 라. 이용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마.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이용자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 사. 이용자의 식사제공, 이용 상담, 이용편익 제공
- 아. 이용자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 자.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 차.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 카. 수급자, 보호자의 요청 협조

3. 이용자의 의무

- 가.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나. 주야간보호 급여 범위 내 서비스 이용
- 다.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 라.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 마. 기타 시설 규칙 및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이행 의무

4. 보호자의 의무

- 가.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의무
- 다.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 마.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제4조 (계약해지 요건)

1.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 나. 주야간보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보호자와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가.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 나.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다. 이용자의 건강상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 라.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 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때
 - 마. 이용자가 3개월 이상 이용료를 납부 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 바. 이용자가 기관 내에서 센터 규칙이나 센터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센터 운영 또는 서비스 제공에 지장을 줄 때
 - 사. 이용자의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타 이용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 아. 이용자의 신체 및 정신적 질환의 악화로 인해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 자.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 차. 이용자가 병원입원, 친지방문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1개월 이상 장기간 결석할 경우

제5조 (계약의 해지)

1. 보호자는 제6조 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 만료일 전에 종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할 수 있다.

2. 센터는 제6조 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증빙서류와 함께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6조 (미이용 비용산정)

1. 센터는 월 15일 이상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수급자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 5일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상 이용 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의 미이용일에 대한 적용은 평일(월 ~ 금요일)기준으로 한다. 다만 월중 급여계약이 체결되어 급여가 개시된 경우 당해 월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미 이용 비용청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급여비용은 재가급여 이용한도금액에 포함된다.

제7조 (이용료 납부)

서비스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이용료를 납부한다.

1.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이용료는 이용자가 제공받은 각 서비스 유형별 총 급여비용의 15%에 해당하는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은, 아래 [별표 1]과 같다.

○ 주야간보호 이용시간별 급여비용(원)

구 분	장기요양 1등급	장기요양 2등급	장기요양 3등급	장기요양 4등급	장기요양 5등급	인지지원 등급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36,920	34,210	31,580	30,140	28,700	28,700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49,530	45,880	42,350	40,910	39,450	39,450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61,600	57,070	52,690	51,250	49,790	49,790
10시간 이상 ~12시간 미만	67,870	62,870	58,080	56,620	55,180	49,790
12시간 이상	72,780	67,420	62,280	60,840	59,400	49,790
비급여항목 및 금액	식사재료비 1끼 3,000원 + 간식비 1회 1,000원 = 4,000원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등급
1,672,700	1,486,800	1,350,800	1,244,900	1,068,500	597,600

2.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5일에 정산하고 보호자에게 15일 까

지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을 통보하다.

3. 기관은 매월 이용료를 무통장으로 20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국민은행 834701-04-169998 (예금주 : 창동휴재활데이케어센터)

4. 비급여라 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식재료비, 이미용비 등 기타 추가로 발생하는 급여를 말한다.
5. 등급외자의 1일 이용료 24,000원 이다.(중식비 및 간식비 포함하고 석식비는 제외함)
6. 급식 및 간식 제공을 제외한 개별서비스 이용에 대한 별도의 비용은 청구하지 않으며, 장기요양보험수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7. 기관은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일수에 따라 산정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를 보호자에게 발송한다.
8. 이용료의 납부는 계약서에 명시한 입금계좌로 입금 또는 현금수납으로 한다.
9. 기관은 보호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제8조 (재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1. 계약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이 변경된 경우
4. 보호자와 센터가 필요한 경우